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1장 :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선거의 이념과 원칙]
- 제 3 조 [적용범위]

2장 : 선거관리기구

1절 :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제 4 조 [지위와 목적]
- 제 5 조 [구성 및 위원장]
- 제 6 조 [권한 및 의무]
- 제 7 조 [임기]
- 제 8 조 [회의 소집]
- 제 9 조 [개회 및 의결]
- 제 10 조 [회의내용공개]
- 제 11 조 [출석요구]
- 제 12 조 [선거관련공고]
- 제 13 조 [선거실무위원]
- 제 14 조 [재정]

2절 :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 제 15 조 [지위와 목적]
- 제 16 조 [권한 및 업무]
- 제 17 조 [구성]

3장 : 선거운동본부

- 제 18 조 [목적]
- 제 19 조 [의무 및 직무]
- 제 20 조 [명칭]
-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 제 22 조 [선거운동본부장]
- 제 23 조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 제 24 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제 25 조 [자료물의 보관 및 열람]
- 제 26 조 [선거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4장 : 선거인과 피선거인

1절 : 선거인과 피선거인

- 제 27 조 [선거인]
- 제 28 조 [피선거인]

2절 : 선거인명부

- 제 29 조 [선거인명부 작성]
- 제 30 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3절 : 후보자 등록

- 제 31 조 [예비후보자]
- 제 32 조 [후보자 등록서류]
- 제 33 조 [추천인 명부]
- 제 34 조 [후보자 자격심사]
- 제 35 조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 36 조 [후보자 등록 및 공고]

5장 : 선거

1절 : 선거일 및 투표방식의 결정

- 제 37 조 [선거일]
- 제 38 조 [투표방식]
- 제 39 조 [선거시행 공고]
- 제 40 조 [선거연기]

2절 : 선거운동

- 제 41 조 [선거운동]
- 제 42 조 [선거운동기간]
- 제 43 조 [불법선거운동]
- 제 44 조 [개인유세]
- 제 45 조 [합동유세]
- 제 46 조 [정책공청회]
- 제 47 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3절 : 선거선전물

- 제 48 조 [선거 선전물]
- 제 49 조 [인쇄 선전물]
- 제 50 조 [온라인 선전물]
- 제 51 조 [선전물의 원칙]

6장 : 투표

1절 : 투표 원칙

- 제 52 조 [투표의 원칙]

2절 : 투표공고 및 투표시간

- 제 53 조 [투표공고]
- 제 54 조 [투표시간]

3절 : 투표관리

- 제 55 조 [투표소 관리 업무]
- 제 56 조 [투표용지]
- 제 57 조 [투표소]
- 제 58 조 [투표함]
- 제 59 조 [투표록]
- 제 60 조 [투표참관]
- 제 61 조 [투표독려행위]

4절 : 투표절차

- 제 62 조 [투표용지 발급]
- 제 63 조 [기표]
- 제 64 조 [온라인 투표]

5절 : 전자 투표

- 제 65 조 [전자 투표]

6절 : 투표함 관리

- 제 66 조 [투표함 봉합]
- 제 67 조 [투표함 이송]

7절 : 연장투표 및 재투표

- 제 68 조 [연장투표]
- 제 69 조 [재투표]

7장 : 개표

1절 : 개표시간 및 개표공고

- 제 70 조 [개표시간]
- 제 71 조 [개표공고]

2절 : 개표관리

- 제 72 조 [개표장]
- 제 73 조 [개표소]
- 제 74 조 [개표업무]
- 제 75 조 [개표참관]
- 제 76 조 [개표관람]

3절 : 개표절차

- 제 77 조 [개표준비]
- 제 78 조 [개표진행]
- 제 79 조 [개표선언 및 투표함 개함]
- 제 80 조 [개표결과 공고]
- 제 81 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4절 : 무효투표 및 이의신청

- 제 82 조 [무효투표]
- 제 83 조 [효력]
- 제 84 조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8장 : 당선인

- 제 85 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 제 86 조 [당선인의 사퇴]
- 제 87 조 [당선 무효]
- 제 88 조 [당선인의 재결정]

9장 : 징계

- 제 89 조 [징계]
- 제 90 조 [자격박탈]
- 제 91 조 [경고]
- 제 92 조 [주의]
- 제 93 조 [시정명령]
- 제 94 조 [징계의 결정]
- 제 95 조 [징계에 관한 이의신청]

10장 : 재선거 및 보궐선거

- 제 96 조 [투표율 미달로 인한 재선거]
- 제 97 조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
- 제 98 조 [학생회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11장 : 개정

- 제 99 조 [개정]

부칙

- 제 1 조 [효력의 발생]
- 제 2 조 [후보자 정보 공시 제도]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10장(선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학생회 및 학과(부) 학생회 선거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의 이념과 원칙]

- ① 선거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및 학과(부) 학생회의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닌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적인 과정이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① 본 세칙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과(부) 학생회 선거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하에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관리기구

1절 :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조 [지위와 목적]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 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진행, 조절, 조정, 통제할 권한을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의결, 운영, 집행기구로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선거를 제 1조(목적)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고 대중적으로 치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구성 및 위원장]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64조(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받는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세칙의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및 기타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⑤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중대한 사항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권한 및 의무]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제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보장받으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실무위원 선출
 - 2. 선거 방식에 대한 결정
 - 3. 선거운동 방법 및 일시 조정
 - 4. 본 세칙 및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규칙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징계 조치
 - 5.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 당선인의 결정
 - 6. 재선거 및 선거연기의 결정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제반 업무를 기획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거운동본부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
 - 2. 입후보자 자격심사
 - 3. 선거인명부 작성과 비치
 - 4. 선거 독려 홍보물 제작
 - 5. 투표소 질서 유지 및 감독
 - 6. 회의록 공개

제 7 조 [임기]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 분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전까지로 한다.
- ② (오프라인 선거) 당선 공고 후 1일 이내로 해산한다.
- ③ (온라인 선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종료 직후 해산한다.

제 8 조 [회의 소집]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혹은 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 1.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반 일상 업무 처리
 - 2. 선거운동본부 혹은 후보추대위원회의 이의신청
 - 3. 기타 선관위 소집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소집한다.
 - 1.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 2.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 3. 선거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 4. 징계사항의 적발 및 제보

제 9 조 [개회 및 의결]

- ①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 ②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단,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며, 징계와 이의신청에 대한 사안은 재적인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회의내용공개]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의 진행 전까지 회의록을 채택하고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단, 차기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의 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본회의 회원과 학내 언론 기관의 참관 및 취재를 허용한다.

제 11 조 [출석요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본부장
3. 선거와 관련하여 심각히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징계의 대상자 혹은 연관자

제 12 조 [선거관련공고]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에 따라 선거 진행 상황 관련 공고를 해야 한다.
- ② 공고문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에 동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특수한 사유로 오프라인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고 게시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④ 오프라인 공고문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것만 효력을 갖는다.
- ⑤ 공고문은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게시가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 ⑥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공고문을 훼손했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하며, 훼손의 정도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제 13 조 [선거실무위원]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보조하는 선거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학과(부) 1, 2, 3학년 대표자는 선거실무위원이 되며, 학년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자율적으로 1명을 선발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각 학과(부) 선거실무위원의 최소 인원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④ 선거실무위원은 소속 학과(부)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실무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소속 회원
 2. 선거운동본부 구성원
 3.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 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무위원의 명단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송부한다.

제 14 조 [재정]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 제반 업무 집행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본회 재정의 일부로 진행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정 사용 결산안과 증빙 자료를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절 :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제 15 조 [지위와 목적]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학과(부) 학생회 선거에 대한 제반 업무를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각 학과(부) 학생회칙 그리고 본 세칙에 의해 진행, 조절, 조정, 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고 대중적으로 치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제 16 조 [권한 및 업무]

- ①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부) 학생회 선거의 진행, 관리 등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획 및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②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부) 학생회 선거 진행사항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구성]

- ①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과(부)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학과(부)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타 부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기타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3장 선거운동본부

제 18 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제 19 조 [의무 및 직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선거운동본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5. 선거운동본부는 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선거운동본부는 당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록 자료 및 선전물을 보관해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원의 모집
 2.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유세·홍보
 3.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
 4. 후보자 보좌
 5. 투·개표 시 참관인 파견

제 20 조 [명칭]

- ① 등록서류 발급 이후부터 후보자 최종등록 전까지는 후보추대위원회라 칭한다.
- ②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로는 선거운동본부라 칭한다.

제 21 조 [구성 및 자격]

- ① 선거운동본부는 정 부호, 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차장급 이상의 간부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5.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6. 해당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임명 및 선출된 자
- ④ 3항 2~6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와 그 구성원을 대표하며, 선거운동본부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공식적 석상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입장을 대변 및 보좌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권한을 갖는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은 후보자가 선거운동본부원 중에서 임의로 임명한다.
- ⑤ 선거운동본부장은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로는 임의적 교체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사망
 2.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입원
 3. 직계 가족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휴학 및 유학으로 인한 선거인 자격 포기
- ⑦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승인 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⑧ 선거운동본부장은 타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와 관련하여 본 세칙을 기본으로 하는 일련의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문서화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합의사항의 효력은 본 세칙에 준하며 해당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만 그 효력이 발휘된다.

제 23 조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 ① 후보추대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일까지 선거운동본부원 명부를 작성 후 제출해야한다.
- ② 서류 미제출 상태로 등록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후보추대위원회는 즉시 해산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거운동본부의 명칭
 2.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이름, 소속, 학번, 연락처, 직책
 3.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사진
 4.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의 위치
- ④ 등록일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의 선거 관련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제 24 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선거운동본부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교내에 두어야 하며, 그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 사무실로 사범대학 학생회실 및 학과(부) 학생회실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의 위치를 기재한 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자료물의 보관 및 열람]

- ① 선거운동본부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록 자료 및 선전물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이후로는 당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록 자료 및 선전물 보관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사범대학 집행부에 위임한다.

- ④ 차기 선거를 위해 조직되는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록 자료 및 선전물에 대한 열람 신청을 사범대학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고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범대학 집행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제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 26 조 [선거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운동본부장만 할 수 있다. 단 '선거 관련 사항'은 선거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만 해당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심의를 통해 이의에 대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이 이의신청함으로써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한다.

4장

선거인과 피선거인

1절 : 선거인과 피선거인

제 27 조 [선거인]

- 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3조(회원의 자격)과 제 62조(선거권)에 따라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사 과정의 모든 회원은 선거인이 될 수 있다. 단, 투표일 전날까지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으로 제한한다.
- ② 교환 및 교류 학생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 28 조 [피선거인]

- 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31조(자격 및 선출) 1항의 조건에 부합한 자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거인
 4. 해당 학기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인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단,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10일 이전까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 오프라인 지정 게시판과 사범대학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퇴서를 공고하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기 사범대학 집행부 국(부)·차장급 이상의 간부
 2. 해당 학기 학과(부) 학생회 총무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3. 해당 학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4. 해당 학기 총(여)학생회 간부 및 총학생회 특별기구 위원
 5. 해당 학기 총예비역 학생협의회 간부
 6. 해당 학기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간부
 7.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간부
 8. 해당 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간부
- ③ 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직책 사퇴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④ 재선거의 경우, 낙선자는 피선거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⑤ 피선거인은 2항에 명시된 직책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절 : 선거인명부

제 29 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사범대학 행정실에 의뢰하여 해당 학기 재학생 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위임 절차를 1회 이상 거친다.
- ④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검토한 뒤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0 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3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선거인에게 공람시킨다.
- ② 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③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투표일 전날까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절 : 후보자 등록

제 31 조 [예비후보자]

- ① 본 선거의 입후보 희망자는 정 후보 1명, 부 후보 1명으로 구성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② 입후보 희망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서류를 발급받은 후 '예비후보자'로 칭호가 변경되며, 후보추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2 조 [후보자 등록서류]

- ① 본 선거 예비후보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후보추대위원장의 대리 제출을 허용한다.
 - 1. 예비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 2. 선거운동본부장 재학증명서 1부
 - 3. 후보자 등록 지원서
 - 4.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 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및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1부
 - 6. 추천인 명부
 - 7. 후보자 이력 공개서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 1.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지 않은 서류
 -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
 - 3.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추대위원장이 아닌 자가 제출한 서류
 - 4. 크게 훼손된 서류

제 33 조 [추천인 명부]

- ①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 28조(피선거인)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인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추천인 명부 작성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선거인의 직접 서명 혹은 날인만 인정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 1. 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
 - 2. 둘 이상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
 - 3. 선거인이 아닌 자의 추천
-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후보자를 [자격박탈] 조치한다.
 - 1. 교외에서 추천인 명부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 2. 예비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선거인에게 추천을 의뢰한 경우
 - 3. 추천인 명부에 선거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4. 대필을 고의로 악용한 경우
 - 5. 강압에 의해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 ⑤ 추천인 명부 작성 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예비후보자의 소개와 선거운동본부의 명칭 등의 설명은 허용한다.

제 34 조 [후보자 자격심사]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당일에 제 28조(피선거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징계 여부 혹은 후보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 기간 안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3조(자격박탈)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피선거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6시간 이내에 해당 후보추대위원회에 통지한다.

제 35 조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부적격 판정 시 후보추대위원회는 피통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통해 신청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한 후 2차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 ④ 최종 부적격 판정 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추대위원회에 통지하고 후보추대위원회는 즉시 해산한다.

제 36 조 [후보자 등록 및 공고]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자격심사 완료 후 후보자 등록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모임의 참여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추대위원장으로 하며, 2명 이상 불참 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추대위원회를 [주의] 1회로 조치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각 후보추대위원회와 논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정보 공고와 함께 후보자 이력 공개서를 24시간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5장 선 거

1절 : 선거일 및 투표 방식의 결정

제 37 조 [선거일]

- ① 선거일과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63조(선거 시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학사 정기시험」 일정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일은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대면]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주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최소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일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일 결정 후 1항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결정한다.
 1. 선거시행 공고일을 선거일정의 첫 날로 한다.
 2. 등록서류 배포기간은 선거시행 공고 후 5일 이내로 한다.
 3. 추천인 작업기간은 등록서류 배포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4. 후보자 등록기간은 추천인 작업기간 종료 3일 전부터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학사 정기시험」 및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후에 시행하여 선거일 전날 자정에 종료하며, 15일 이내로 한다.
- ④ 연장투표는 제 66조(연장투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일과 동일한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8 조 [투표방식]

투표방식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오프라인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선거를 허용한다.

제 39 조 [선거시행 공고]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확정 후에 선거시행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일을 선거일정의 첫 날로 한다.
- ② 선거시행 공고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선거일정은 등록 서류 배포 기간, 추천인 명부 작성 기간,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 등을 포함한다)
 1. 관련 세칙 조항
 2. 선거 일정
 3. 투표 방식
 4.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

제 40 조 [선거연기]

-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 결정 사유를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 후 즉시 공고한다.
- ② 선거연기로 인한 선거일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절 : 선거운동

제 41 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본부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규정한다.
-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 ③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 1. 사범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 3.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제 42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제 37조(선거일) 3항 5호의 규정에 준하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 43 조 [불법선거운동]

- ① 불법선거운동은 제 42조(선거운동기간)을 통해 규정한 기간 이외에 발생한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사전선거운동과 사후선거운동으로 구분한다.
- ②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 이전까지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로 규정하며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1. 선전물을 통한 선거운동
 - 2.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 3. 유세를 통한 선거운동
 - 4. 정책 공청회 혹은 선거 독려 행사
- ③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각 호와 같다.
 - 1. 입후보자 추천 서명
 - 2. 선거운동원 모집
 - 3.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단, 설문조사는 사전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양식 혹은 내용 등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④ 사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선거운동행위로 규정하며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제 44 조 [개인유세]

-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강의실유세와 거리유세로 구분한다.
- ② 개인유세는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선거인을 비롯한 학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강의실유세는 강의실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개인 유세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사범대학 전공 및 교직 과목의 강의를 이루어지는 강의실의 방문만을 허용한다.
 - 2.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하며, 진행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3.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은 2명까지 동행이 가능하다.
- ④ 거리유세는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개인유세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실내유세는 사범대학 소속 건물의 중앙 로비에서만 가능하다. 단, 교육융합관 4층 오픈홀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해당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할 경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실외유세 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3항과 4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한다.

제 45 조 [합동유세]

- ① 합동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거운동을 의미한다.
- ② 합동유세 장소와 일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 ③ 합동유세 동안에는 개인유세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원을 합동 유세 장소에서 연설자를 보조하는 행위로 역할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④ 합동유세 연설자는 정후보와 부후보, 찬조연설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인으로 제한한다.
- ⑤ 합동유세의 기본 진행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합동유세 연설자는 유세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연설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설 순서는 유세 5분 전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주관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3. 연설 시간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최대 20분을 부여한다.
 4. 연설 시간을 위반할 경우 1분마다 [주의] 조치하며, 5분 초과 시 연설을 강제로 중단한다.
 5. 연설의 내용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의 전문과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하며, 불응 시 연설을 강제 중단한다.
- 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합동유세와 관련한 징계 조치 사항을 유세장에서 즉시 공포한다.
- ⑦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유세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퇴장조치 할 수 있다.

제 46 조 [정책공청회]

- ① 정책공청회는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정책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할 수 있는 공식 석상을 의미한다.
- ② 정책공청회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정책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로 결정한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공청회에 1개 이상의 학내 언론사를 초청해야 한다.
- ⑤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질문의 의도가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질의를 무효로할 수 있다.

제 47 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SNS 선거운동, 커뮤니티 선거운동, 블로그 포스팅 선거운동을 포함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각 온라인 매체의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과 후보자 개인 계정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과 후보자 개인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 ④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입 시 '재학생 인증'이 필수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익명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으로 개설한 블로그에서만 가능하다.
- ⑥ 모든 게시물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세부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본부장은 게시물 게시 이전에 원문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게시글의 세칙 위반 사항 확인 등 게시 적합 여부를 판단 후 선거운동본부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3절 : 선거 선전물

제 48 조 [선거 선전물]

- ① 선거 선전물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선전물을 의미한다.
- ② 선거 선전물은 인쇄 선전물과 온라인 선전물로 분류한다.

제 49 조 [인쇄 선전물]

- ① 인쇄 선전물은 인쇄를 통해 제작되는 선거 선전물을 의미한다.
- ② 선거 리플릿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선거 리플릿의 발행은 선거운동본부마다 1,000부 이내로 한다.
 - 2. 선거 리플릿의 내용으로는 후보자 정보와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3. 선거 리플릿의 규격은 펼쳤을 경우 A4용지 규격과 같거나 작은 것으로 제한한다.
 - 4.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비치할 장소와 리플릿 수를 결정한다.
 - 5.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수만큼 선거 리플릿을 비치한다.
- ③ 선거벽보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선거벽보의 발행은 내용별로 최대 3종, 총합 300매 이내로 제한한다.
 - 2. 선거벽보의 규격은 최대 A2용지의 규격으로 제한한다.
- ④ 현수막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현수막의 발행은 선거운동본부마다 5장 이내로 제한한다.
 - 2. 현수막의 규격은 세로 1.5m 이내로 하며, 가로 현수막으로 제한한다.
- ⑤ 모든 인쇄 선전물은 색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선거 선전물은 불법 선전물로 간주한다.
- ⑦ 인쇄 선전물의 게시 기한은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기에 준하며, 선거운동본부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 50 조 [온라인 선전물]

- ① 온라인 선전물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게시되는 형식의 선거 선전물을 의미한다.
- ② 온라인 선전물의 게시 방식은 제47조[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에 준한다.

제 51 조 [선전물의 원칙]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모든 선거 선전물의 발행 및 게시 이전에 원본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이후에 선전물을 발행 및 게시 할 수 있다.
- ② 모든 인쇄 선전물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온라인 선전물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일시가 명시되어야 한다.
- ③ 1항 혹은 2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하며, 불법 선전물로 간주한다.
- ④ 불법 선전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명령 직후 3시간 이내로 자진 철거 및 삭제해야 하며, 불이행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제철거 및 삭제로 조치한다.

6장 투 표

1절 : 투표 원칙

제 52 조 [투표의 원칙]

- ① 투표는 보통·직접·비밀·평등 선거의 원칙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투표는 해당 학기 본회의 모든 회원이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본 세칙에 정해진 투표 자체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해 회원 누구나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원하는 경우 본 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투표는 본회의 회원 스스로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에 대하여 투표 절차, 선거인명부와 투표권자 신분증의 대조 방법 등을 교육하여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 ④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은 어느 후보자나 선본에게 투표했는지 누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도 이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 ⑤ 투표는 회원 간에 평등해야 한다. 회원은 한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재투표가 선언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투표는 모두 무효로 본다.)

2절 : 투표공고 및 투표시간

제 53 조 [투표공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투표 공고'를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단, 재투표의 경우 특이성을 인정하여 재투표 실시 전날 투표공고를 실시해도 된다.

1. 선거의 명칭
2. 관련 세칙 조항
3. 투표일시
4. 학과(부)별 투표소 배정 결과
5. 투표소의 위치
6. 투표 방식
7.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

제 54 조 [투표시간]

- ①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는 08:30부터 18:00까지 진행한다.
- ③ 투표 종료 이전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투표 할 수 있다.

3절 : 투표관리

제 55 조 [투표소 관리 업무]

- ① 투표소에서의 관리 업무는 제 6조(권한 및 의무)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며 선거실무위원은 이를 보조 및 대행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의 부재 시 선거실무위원 중 1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직책을 위임받는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실무위원은 반드시 업무 시간 중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 56 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1. 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후보자의 학과(부), 학년 및 성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수기로 기입되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 보관 및 이송의 권한과 보안의 책임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제 57 조 [투표소]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투표소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고, 학과(부)마다 지정 투표소를 배정한다. 단, 투표소마다 배정된 선거인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 ② 투표소와 관련한 장비와 기구의 구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는다.
- ③ 투표소는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부의 열린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④ 투표소의 시설은 선거 시작 30분 이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투표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투표소에서는 본 세칙과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⑥ 투표소의 기본 시설은 기표소, 투표함,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석, 투표참관인석로 한다.

제 58 조 [투표함]

- ① 투표함의 구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는다.
- ② 투표함은 투입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봉합되어야 하며, 투입구 봉합은 선거 시작과 함께 해제한다.
- ③ 투표함은 사범대학 소속 건물 내부의 폐쇄가 가능한 곳에 보관하며, 투표소 설치 이전까지 폐쇄상태를 유지한다.
- ④ 투표함은 투표소 별로 1개를 둔다.

제 59 조 [투표록]

-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진행 중에 투표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투표록에는 지정된 시간마다 선거인의 수, 투표인의 수, 투표율을 수기로 기입 한다.
- ③ 투표 종료 이후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지정된 곳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제 60 조 [투표참관]

- ①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대신해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는 투표소 당 참관인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본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자
 2.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
 3.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실무위원
 4. 후보자의 가족
- ④ 후보자는 투표 2일 전 18시까지 투표참관인의 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장조치 후 투표참관인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주의] 조치한다.
 1. 투표 방해 및 소란
 2. 특정 후보를 지칭 및 연상하는 언동 및 물품의 선전
- ⑥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즉시 퇴장조치 후 투표참관인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활동 시간 동안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하는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한다.
- ⑧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⑨ 투표참관인은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본 세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61 조 [투표독려행위]

- ① 선거운동본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 후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독려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 ② 1항을 위반 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와 행위의 강제 중단으로 조치하며, 이후 강제 중단된 행위를 무단 강행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주의] 조치한다.

4절 : 투표절차

제 62 조 [투표용지 발급]

- ① 선거인 확인 절차는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 ② 선거인은 학생증, 온라인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사진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③ 본인 확인을 마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서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한 후 서명 혹은 날인한다.
- ④ 선거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선거인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발급받는다.
- ⑤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실무위원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고 절취선을 따라 절취하여 발급하며, 모든 과정을 선거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⑥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소를 이탈할 수 없다.
- ⑦ 선거인의 과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투표를 진행한다.
- ⑧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의 과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투표용지를 공개적으로 파쇄한 후, 동일한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재발급한다.

제 63 조 [기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투표소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진행해야 한다.
- ② 기표소에는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신체의 장애로 인해 본인의 힘으로 기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선거인은 보호자 1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기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접는선을 따라 접은 후,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투표소의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 64 조 [온라인 투표]

- ① 온라인 투표는 기표도구가 아닌 전자기기를 통한 투표를 의미하며, 전자 투표와 온라인 현장 투표로 구분한다.
- ② 전자 투표는 제 65조(전자 투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③ 온라인 현장 투표는 기표소에서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투표절차는 오프라인 투표에 준한다.
- ④ 온라인 현장 투표에서 투표함은 투표에 사용한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 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표 시스템 제공사의 지침을 반영한다.

5절 : 전자 투표

제 65 조 [전자 투표]

- ① 선관위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선거최종등록모임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기권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권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전자투표는 제 52조에 열거된 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원칙에 부합하는 전자 투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투표 식별·추적 방지를 위한 익명화
 - 2. 불법적인 접근·위조·변조 차단을 위한 암호화, 취약점 검사 등 기술적 조치
 - 3.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성 보장
 - 4. 한국어 외 다른 언어 지원 또는 번역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보장
- ⑤ 투표 일정은 제 37조를 따르며, 투표 시간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한다.
- ⑥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본의 대표 공약, 징계 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 ⑦ 전자투표에는 6장 3절, 6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투표 이용자가 전자투표를 제출하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6절 : 투표함 관리

제 66 조 [투표함 봉합]

- ① 투표함의 봉합은 투표용지 투입구에 봉인지 부착 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종료 선언 직후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합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은 투표록과 투표정황 기록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한다.
- ④ 온라인 현장 투표 투표함의 봉합은 전원 종료 후 봉인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제 67 조 [투표함 이송]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동행 하에 투표함 혹은 온라인 현장 투표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 ② 투표함을 이송할 때는 선거인명부, 투표록, 투표정황 기록지, 기타 선거 관련 서류 및 용품을 함께 이송한다.
- ③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송된 물품을 인수 후 즉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혹은 날인한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혹은 연장투표로 인한 투표소 설치 이전까지 투표함 보관 장소를 폐쇄한다.

7절 : 연장투표 및 재투표

제 68 조 [연장투표]

- ① 연장투표는 최초 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에 실시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 투표 종료 선언 후 1시간 이내에 연장투표 공고를 해야한다.
- ③ 연장투표는 선거일과 동일한 주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연장투표는 최대 2일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투표율이 50% 이상이 된 날의 1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 ⑤ 연장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⑥ 연장투표 종료 후 최종 투표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후보자는 모두 낙선자가 된다.

제 69 조 [재투표]

- ① 재투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 1. 제 85조(당선인 결정 및 공고)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 84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한 이의가 인용되어 선거결과에 변동이 생긴 경우
 - 4. 전자 투표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경우

- ② 재투표의 시기는 재투표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③ 재투표의 실시방법은 최초 투표와 동일하나, 선거운동은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장 개 표

1절 : 개표시간 및 개표공고

제 70 조 [개표시간]

개표는 투표 종료 선언 후 2시간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연기할 수 있다.

제 71 조 [개표공고]

- ① 개표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 1/3 이상 참석확인 후 시행할 수 있으며, 미충족시 무기한 연기된다. 단,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제 74조(개표업무)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석을 필수로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여부, 개표시간, 개표장 위치가 결정되면 이를 개표 1시간 이전에 공고해야한다.

2절 : 개표관리

제 72 조 [개표장]

- ① 개표장은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공간 전체를 의미한다.
- ② 개표장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내의 공개된 곳으로 정한다.

제 73 조 [개표소]

- ① 개표소는 개표장 내에서 개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② 개표소와 방청석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원활한 개표진행과 질서를 위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의 동선을 제한 할 수 있다.
- ④ 개표소에 전자기기 반입은 불가하며, 반입이 적발된 경우 즉시 퇴장조치한다.

제 74 조 [개표업무]

- ① 개표업무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학과(부) 회원에게 직책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개표업무의 총 책임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 ③ 개표업무를 담당하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해야한다.

제 75 조 [개표참관]

-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표상황의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은 3인의 명단을 투표 2일 전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자의 규정

은 제 60조 3항 1호 내지 4호에 준한다.

- ④ 개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퇴장조치 후 투표참관인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주의] 조치한다.

1. 개표 방해 및 소란
2. 개표소 내 전자기기 반입

- ⑤ 개표참관인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하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제 76 조 [개표관람]

- ① 개표관람인은 개표장에서 개표 상황을 방청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개표관람인은 개표장 내에 마련된 관람석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외의 공간은 제한한다.
- ③ 개표관람인은 개표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를 퇴장 조치할 수 있다.

3절 : 개표절차

제 77 조 [개표준비]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15분 전까지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야한다.
- ② 후보자는 개표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해야하며, 개표 종료 전에는 퇴장할 수 없다.
- ③ 2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한다.

제 78 조 [개표진행]

- ① 개표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표 5분 전까지 개표참관인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 문서에 서명한다.
 3.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제 79조(개표선언 및 투표함 개함)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표선언을 해야 한다.
 4.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소별 투표인 수를 발표한다.
 5. 제 79조(개표선언 및 투표함 개함) 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표함을 개함한다.
 6.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제 82조(무효투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무효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7.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용지를 구분하여 득표에 따라 100장씩 묶으며 득표를 확인하며, 개표참관인은 득표를 검산한다.
 8. 검산이 완료된 투표용지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으로 1년간 봉인한다.
 9.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득표를 확인한다.
 10.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제 80조(개표결과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해야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현황판에 기재해야 한다. 단, 현황판의 내용은 모든 개표관람인이 확인하는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 79 조 [개표선언 및 투표함 개함]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예정시각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참석 인원 수와 후보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개표선언을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예정시각을 즉시 공고한다.
- ② 투표함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 개표참관인의 투표함 봉합 상태 확인 후 개함한다.
- ③ 투표함은 제1투표함부터 차례대로 개함한다.

제 80 조 [개표결과 공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 81 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결과 공고 후 24시간 이내로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는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제기한다.
- ③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이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문제된 사항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를 인용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된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당선을 확정한다.

4절 : 무효투표 및 이의신청

제 82 조 [무효투표]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지 아니한 것
 2.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둘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5.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훼손된 투표용지
 8. 이외의 경우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인정하지 않는 기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기표란에만 2회 이상 기표된 것
 2. 지정된 기표도구 인주의 번짐으로 인해 기표란의 기표가 해당 후보자의 칸 안에 묻어난 경우
 3. 이외의 경우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인정하는 기표는 유효 처리한다.

제 83 조 [효력]

- ① 한 투표함에서 투표자 수의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함을 무효처리한다.
- ②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수의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를 무효처리한다.
- ③ 부정행위가 발생한 투표함의 효력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 및 결정한다.

제 84 조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각 후보자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심의를 통해 이의에 대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당선인

제 85 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 ① 당선인은 총 선거인의 50%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한다. 단,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총 선거인의 50%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한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1.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가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수가 같은 경우
- ③ 제 1항과 제 81조(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2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하며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한다.

제 86 조 [당선인의 사퇴]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87 조 [당선 무효]

- ① 당선인 공고 이전에 피선거인의 자격이 박탈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이전에 피선거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제 88 조 [당선인의 재결정]

당선인의 자격박탈 혹은 사퇴로 인해 당선인이 공석이 된 경우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을 2위 득표자로 재결정한다. 된다. 단,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선거가 무산된다.

9장 징 계

제 89 조 [징계]

- ① 징계는 본 세칙이 규정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

제 90 조 [자격박탈]

- ① 다음과 같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자격박탈] 조치한다.
 1. 자격박탈을 명시한 조항의 위반
 2. 경고조치의 3회 누적
- ②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물을 [자격박탈] 조치한다.
 1. 후보자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금·납치·폭력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수수 및 편의 제공
 3. 선거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모금행위
 4.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예훼손·불법선전물 배포·비방·흑색선전
 5. 투표시설의 파괴 및 은닉

6. 투표함 무단 개함

- ③ 후보자가 자격박탈 조치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즉시 해산한다.
- ④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자격박탈] 조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 91 조 [경고]

- ① 다음과 같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1. 경고를 명시한 조항의 위반
 - 2. 주의조치의 2회 누적
 - 3. 제 90조(자격박탈)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이 자격박탈 된 경우
- ②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경고] 조치한다.
 - 1.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및 흑색선전
 - 2. 상대 후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 3.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 ③ 경고 횟수에 따른 징계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포함한 공개 사과문 발표 및 공고
 - 2. 경고 2회 - 경고일 익일 선거운동 1일 중지. 단, 익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가장 빠른 평일로 한다.(이전 1호 징계 포함)
 - 3. 경고 3회 - 피선거인 자격 박탈(이전 1호 징계 포함)

제 92 조 [주의]

- ① 다음과 같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한다.
 - 1. 주의를 명시한 조항의 위반
 - 2. 시정명령의 3회 누적
 - 3. 시정명령 조치된 행위와 상태의 반복 혹은 지속
- ②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주의] 조치한다.
 - 1. 위력을 통한 선거운동
 - 3. 상대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에 대한 모욕 및 비방

제 93 조 [시정명령]

- ① 시정명령은 징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취하는 징계조치이다.
- ②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3시간 이내에 해당 행위와 상태를 시정해야 하며, 불이행시 [주의]로 격상하여 조치한다.
- ③ 제 22조(선거운동본부장) 8항의 규정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시정명령] 조치한다.

제 94 조 [징계의 결정]

- ① 징계 사항이 적발되거나 및 접수되었을 경우에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징계 조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소견을 밝혀야 한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사항에 대한 내용과 조치에 대한 이유를 즉시 공고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구두로 통지한다.
- ③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함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 95 조 [징계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징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징계의 피통지 후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②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8조(회의소집) 2항과 제 9조(개회 및 의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소집 후 심의를 통해 이의에 대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10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 96 조 [투표율 미달로 인한 재선거]

- ① 재선거는 제 68조 5항(연장투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후보자 등록 절차부터 다시 실시한다. 단, 제 28조(피선거인)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낙선자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 ② 재선거일 및 선거일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재선거는 차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회 미건설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경우 본 선거가 실시된 학기의 종강 이전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7 조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

- ① 선거무산은 해당 학기 선거가 무산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42조 1항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입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으로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3. 제 83조(효력)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선거무산에 의한 보궐선거일 및 선거일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제 37조(선거일)의 규정에 준한다. 단, 차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제 98 조 [학생회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학생회장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 65조(보궐선거) 2항의 규정을 따른다.

11장 개 정

제 99 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의 발생]

본 세칙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은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후보자 정보 공시 제도]

- ① 후보자 정보 공시 제도는 본회 회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시, 등록 공고와 함께 후보자 이력 공개서를 공고하도록 한다.
- ③ 후보자 이력 공개서는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의 양식을 만들되, 종교와 정당에 대한 이력은 필히 포함하도록 한다.
- ④ 후보자 이력 공개서에 중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중대한 사실을 미기재할 경우, 적발되어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토록 한다.
- ⑤ 4항에 대해 후보자의 허위 또는 미기재 사실이 적발될 시, 중대함의 여부는 당선 전이라면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당선 후라면 중대함의 여부는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결에 불복 시 사범대 운영위원 중 누구라도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중대함의 판단 권한은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회의로 이양된다.)
- ⑥ 후보자 정보 공시 제도에 의한 당선자의 자격상실에 관해서는 해당하는 자에게만 한하도록 한다.
- ⑦ 당선 이후, 특정 단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체없이 특정 단체에 가입했음을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시점을 증명해야 한다.

[2019년 9월 10일_제정]

[2021년 9월 30일_개정]

[2026년 9월 01일_개정]